제 5 장 기후변화협약 대책 추진

자원정책과 서기웅 사무관

제 1 절 기후변화협약과 협상동향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97년에는 구속력 있는 각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동구권을 포함한 38개 의무부담국들이 2008~2012년 기간중(제1차 공약기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3월 미국 부시행정부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의사 표명으로 기후변화협약 협상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운영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Marrakesh Accords), 2002년 10월 제8차 당사국총회(인도 뉴델리)와 2003년 12월 제9차 당사국총회(이태리 밀라노)에서 미타결된 교토의정서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준비는 이루어졌다. 다만, 2003년 12월말 현재, 교토의정서에 비준(120개국)한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국가의 1990년 이산화탄소(CO_2)배출량은 총배출량의 44.2%로 교토의정서 발효조건인 55%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1990년 기준으로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의 비준 거부(2001.3월)로 17.4%를 차지하고 있

는 러시아의 비준 여부에 달려 있다.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나 2004년 3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 대통령선거이후에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경우 2005년부터는 2013~2017년 기간(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만일 러시아의 비준거부로 교토의정서가 폐기되는 경우 새로운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부담 체계("Beyond Kyoto")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에 교토의정서를 비준,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은 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부무담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정서 체제가 논의되는 어느 경우이든, OECD 회원국이며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제1차 의무부담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부담 참여압력은 가중될 것이며, 조만간 의무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 2 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에너지·산업부문에서 발생한다.

2001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48,038천TC(Tons of Carbons)를 기록하여 2000년(144,259천TC)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에너지 소비증가에 기인한다. 2001년 전년대비 배출증가분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에너지부문이 104.2%, 산업공정부문이 -3.5%, 임업부문이 -3.0%, 폐기물부문이 2.2%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총배출량중 에너지부문이 83.5%, 산업공정부문이 10.6%, 농업/축산부문이 3.0%, 토지/임업부문이 -6.8%, 폐기물부문이 2.9%를 차지한다. 가스별로는 순배출량중 에너지연소, 폐기물, 축산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에너지

관련 CO_2, 기타부문의 CO_2, CH_4, N_2O가 각각 82.2%, 4.8%, 2.8%를 차지하고, 기타 복합가스인 HFCs, PFCs, SF_6가 모두 합하여 3.8%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5.2%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배출량도 1990년 이후 연평균 4.3%씩 증가하여 2001년에 3.13TC를 기록하였다. 한편, 온실가스원단위는 1990년대에 들어 199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료연소 및 탈루성으로 구성되는 에너지부문에서는 1990년에 67,567천TC에서 2001년에는 123,540천TC를 배출하여 연평균 5.6%의 배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공정부문의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연평균 10.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표 Ⅵ-5-1>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90~'01 연평균증가율
온실가스 총배출량(천TC)	84,738	123,445	123,974	135,542	144,259	148,038	5.2%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인)	1.98	2.74	2.68	2.91	3.07	3.13	4.3%
온실가스/GDP (TC/백만원,'95)	0.322	0.327	0.314	0.310	0.301	0.300	-0.6%

<표 Ⅵ-5-2> 온실가스 배출/흡수 부문별 추이

(단위 : 천TC)

구 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90～'01 연평균 증가율
총배출량	84,738 (100.0)	123,445 (100.0)	123,974 (100.0)	135,542 (100.0)	144,259 (100.0)	148,038 (100.0)	5.2%
에너지	67,567 (79.7)	101,490 (82.2)	102,335 (82.5)	111,528 (82.3)	119,601 (82.9)	123,540 (83.5)	5.6%
산업공정	5,428 (6.4)	12,747 (10.3)	12,393 (10.0)	14,933 (11.0)	15,886 (11.0)	15,755 (10.6)	10.2%
농업·축산	4,798 (5.7)	4,917 (4.0)	4,821 (3.9)	4,656 (3.4)	4,519 (3.1)	4,405 (3.0)	-0.8%
토지이용 변경 및임업(흡수원)	6,476 (-)	5,793 (-)	9,949 (-)	10,422 (-)	10,156 (-)	9,448 (-)	3.5%
폐기물	6,945 (8.2)	4,291 (3.5)	4,425 (3.6)	4,425 (3.3)	4,254 (2.9)	4,337 (2.9)	-4.2%
순배출량	78,262	117,651	114,025	125,120	134,102	138,590	5.3%

우리나라 경제는 당분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은 2010년에 167.9～172.1백만TC, 2020년에 196.6～206.3백만TC로 2001년 대비 각각 1.3～1.4배, 1.6～1.7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GDP증가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여 온실가스집약도(온실가스/GDP)는 2000년 0.25에서 2010년에는 0.21, 2020년에는 0.16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제 3 절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1. 개 요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관련부처 및 유관 연구소 등으로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9월 국무총리령을 제정하여 이 기구를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2002년 3월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 개발촉진,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 교토메카니즘 및 통계 기반 구축,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등 5개부문 82개 세부추진계획을 포함하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산업부문(37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2. 의무부담 협상에의 적극적인 대응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제2차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거나 교토의정서가 폐기되고 새로운 의무부담체계가 논의되는 경우 모두 우리나라는 의무부담 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부담협상의 기본이 되는 온실가스배출통계를 정비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통계는 기초통계(activity data)와 배출계수(emission factor)를 통해 산출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초통계인 에너지통계의 체제를 개편하고, 국가고유배출계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종 기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대는 2003년 7월에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온실가스배출계수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무부담 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 2005년 전까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의무부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1년부터 '기후변화협

약과 교토의정서 대응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3년 12월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9차 당사국총회 기간(2003.12.1~12.12)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널리 알리고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에 대비한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 현황,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제1차 보고서는 1998년에 제출)하였다. 또한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스타인, 모나코 등과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협상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기후변화협약 Non-Annex I (비부속서 1 국가)국가가보고서 작성 자문 전문가그룹」에 우리나라 전문가 1인이 진출하였다. 그리고,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멕시코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양자 실무회담을 개최(2003.12.9)하여 국제협상과정에서의 정보교환 등 양국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지속 추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3.5%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체에너지, 천연가스 등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공급확대 시책과 자발적협약, ESCO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하여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계획기간 : 2003~2012)」을 2003년 12월 수립하였다.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분야의 집중지원을 통해 저탄소에너지원의 공급을 확대하고 2003년 말 현재 제1차에너지중 1.9%(대수력 포함)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1년에는 5%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대체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2003년 10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하여 태양광·풍력 발전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을 연장(5년에서 15년으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예산도 2002년 18.9억원에서 2003년에는 41.6억원으로 늘렸다. 1986년 도입된 천연가스

(LNG)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보급확대 시책으로 1차에너지중 LNG의 비중이 1990년 3.2%에서 2003년에는 11.8%(잠정)까지 증가하였다. 2003년중에는 도시가스용으로 11,979천톤, 발전용으로 6,468천톤 등 18,447천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저장탱크 48만㎘를 건설하여 총 344만㎘(29기) 확보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에너지진단, ESCO, 자발적 협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541개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까지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1,700여개의 산업체 및 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3년 12월 현재, 163개의 업체가 등록·활동하고 있는 ESCO업체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에는 성과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우수 ESCO 인증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1998년부터 시작된 자발적협약의 경우, 2003년말 현재 699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3년(5년)간 3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5,788천toe/5년(금액으로 11,344억원)의 절약 효과를 거두었다.

4. 교토메카니즘 및 통계 기반 구축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별 에너지설비·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2002년에는 정유, 석유화학 일부(NCC, BTX생산), 2003년에는 석유화학, 섬유, 비금속, 1차금속, 전환(발전)에 대한 산업공정분석 및 기술조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까지 주요 에너지 다소비산업에 대한 에너지설비·기술 인벤토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산업계와 협력하에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등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 등록 및 거래를 위한 온실가스등록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전의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에는 삼성전자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실적 등록(Registry)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사업계획서(Project Design Document) 작성 지침서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국, 덴마크 등 일부 의무부담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3월, 4월, 10월 각각 발전 5사 및 7개 에너지다소비 기업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모의거래를 실시(3차), 온실가스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반구축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을 대상으로 청정개발체제(CDM)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기관이 CDM사업 국제인증기관(Operational Entity)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에너지절약, 폐기물 등의 기술이전사업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5. 에너지·산업부문의 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산업부문의 제도정비를 위하여 2003년 12월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2003.12.30 공포)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등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CO_2에서 N_2O, CH_4, HFCs, PFCs, SF_6 등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7월에 세종대·건국대 등 3개 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여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지원대상 분야, 지원규모 및 지원대학 등을 점차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Ⅵ-5-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원 현황

분 야	대학	지원내용	지원기간
• 온실가스 저감장재량 분석	건국대	1.5억원	'03~'05
•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마련 기반 연구	세종대	〃	〃
•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경북대	〃	〃

한편, 2003년부터 발전, 정유 산업의 업종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2004년부터는 발전, 정유 이외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업종별 대책반은 정부, 산업계, 유관연구소 등으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감축 잠재량, 중장기 R&D 전략, 국제협력 등 업종별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 6 장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

자원정책과 서동구 사무관

제 1 절　개　　요

1. 설치배경

정부는 1993. 7월『신경제』재정개혁부문에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등 에너지관련 5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를 설치키로 하였다.

그 동안 각종 에너지 및 자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예산이 아닌 각종 기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었다. 석유사업기금은 ’79년 석유비축기금, 석유개발기금, 석유안정기금의 독립된 민간관리기금으로 출발하여 ’86년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원화되었다. ’80년대 후반 유가안정시에도 석유사업기금은 조성된 여유재원을 통해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반면,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등 기타 기금은 각각 개별 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세출소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출연과 함께 석유사업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정부예산과 각 기금 예산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이 있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보다는 재원사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정체계를 단순·명료화시키고 국가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특회계를 설치키로 한 것이다. 이후 ’97년 1월에는 그 동안 민간관리기금으로 운용해오던 가스안전관리기금도 에특회계로 통합됨에 따라 ’97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원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었다.

2. 추진경위

가. 법령제정 및 개정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특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1994. 3. 24 제정('95.1.1 발효)되었고 관련법령인 석유사업법시행령, 석탄산업법시행령, 광업법시행령 등의 관련조항도 개정되었다. 또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1994. 12. 31 제정되었으며,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고시 등 에특회계 세입관련 고시와 석유개발조사사업 보조기준 등 에특회계 세출관련 고시도 제정되었다. 한편, 1998. 12. 28자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공기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1999.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1. 8. 10자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에특회계법령의 주요내용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에특회계의 재원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국내판매 부과금 및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와 기존 6개 기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유가완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유가완충 예산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가완충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국제유

가 급등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시행령에서는 에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범위와 동 회계로부터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에특회계의 출연대상기관의 범위에는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둔 에너지관리공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융자대상기관으로는 석유·가스, 에너지이용효율향상, 광업, 석탄, 가스안전 등 각 사업 부문별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6개기관을 지정하여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98. 12월 에특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9년부터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 8월에 에특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 제 기금의 인수・인계

⑴ 추진경위

1994. 12월에 시달한 기존기금의 자산정리 및 인수·인계지침에 따라 각 기금 결산후 자산별로 인수·인계 등을 실시하였는 바, 현금·예금은 에특회계 국고계정에 1995. 2. 28 세입조치하였고, 각 기금의 융자채권(24,457억원)은 융자대상기관별로 인수·인계를 받고 1995. 3. 22 융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비축탄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각 기금의 관리부서 및 위탁관리기관 등과 1995. 3월에 인수·인계를 실시하였다.

⑵ 인수・인계 세부처리지침

(가) 현금・예금

현금·예금은 1994년도 기금결산을 확정한 후 1995. 2월말까지 한국은

행 에특회계 국고계정에 납입하되, 국고에 납입할 금액은 1994년말 보유자금에서 1995년 이월사업비와 1994년말 미지급금 등 단기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이중 불용액·미지급액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지급금·전도금·퇴직충당금 및 퇴직금전환금은 1994 결산 이전에 청산 및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재정예탁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에특회계 소유로 변경하였다.

(나) 채권 및 권리

각 기금의 융자금액은 융자대상기관별로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하되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출자증권·융자채권 등 명세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다.

(다) 채무 및 의무

각 기금의 차입금은 차입기관·금액·상환조건 등을 명기하여 에특회계로 인계하고 미지급금 등 단기부채는 기금관리기관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되, 이관받은 단기부채는 해당기관에서 책임변제한 후 정산하도록 하였다.

(라) 승계 및 정리자산

승계대상자산 종류별로 목록을 작성하되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상각충당금 및 잔존가액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리대상자산은 1994. 12. 31 장부가액 즉, 석유비축자산은 석유사업기금에서 석유비축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석유시추선 융자금 및 저탄사업융자금은 융자채권액,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의 고정자산과 석탄산업안정기금의 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은 결산서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목록을 정리하여 에특회계에 승계하도록 하였다.

⑶ 인수・인계조치사항

<표 Ⅵ-6-1> 기금별 인수・인계내용(총 5조 3,234억원)

구 분	석유사업 기 금	석탄산업 육성기금	석탄산업 안정기금	해외자원 개발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	가스안전 관리기금	계
- 현금 및 예금(억원)	8,729	348	1,013	12	80	966	11,148
- 채권및권리(억원)	23,795	832	1	152	159	670	25,609
·융자채권	23,338	817	-	151	151	600	25,957
·기타채권(미수금등)	457	15	1	1	8	70	552
- 승계자산(억원)	1,343	1,729	-	-	-	-	3,072
·출 자 금	1,343	-	-	-	-	-	1,343
·비축탄등	-	1,729	-	-	-	-	1,729
- 정리자산(억원)	13,380	-	25	0.2	-	-	13,405.2
·출자	13,380	-	-	-	-	-	13,380
·보조	-	-	25	0.2	-	-	25.2
자산총계(억원)	47,247	2,909	1,039	164.2	239	1,636	53,234.2

<표 Ⅵ-6-2>　　정리자산 세부내역(총 1조 3,405억원)

구　분	대상기관	금액 (억원)	자 산 내 용	기금명
○ 출 자	석유공사	12,637	석유비축자산 및 시추선 융자금	석유사업기금
	석탄공사	743	저탄사업의 융자금	
(소계)		13,380		
○ 보 조	광업진흥공사	0.2	고정자산(비품)	해외자원개발기금
	석탄합리화사업단	25	고정 및 기타자산 (전세권 및 유가 증권)	석탄산업안정기금
(소계)		25.2		
합　계		13,405.2		

제 2 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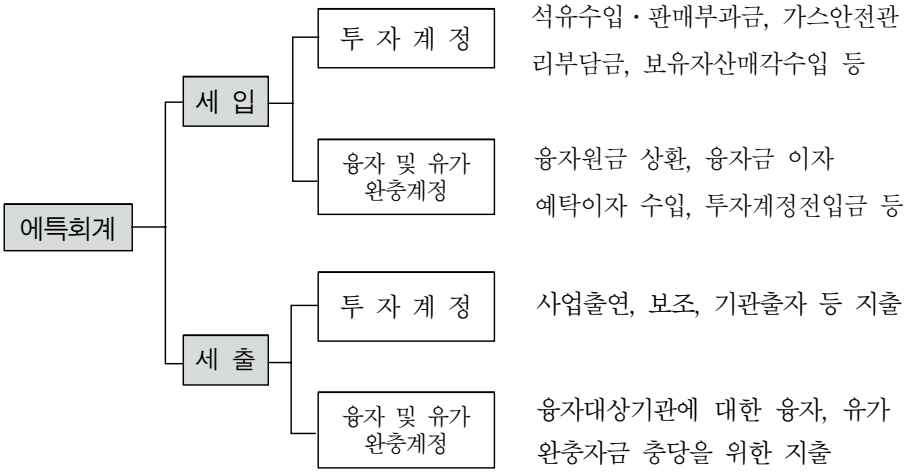
1. 에특회계제도 개요

가. 회계계정의 설치

에특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및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 경상 또는 자본이전적 지출로 구성되며, 융자및유가완충계정은 융자원리금·일반회계전입금·차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융자사업과 유가완충 준비금으로 지출된다.

한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또는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등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부과금의 환급은 환급금지급명령관이 결정·교부한 지급지시서에 의거 한국은행이 에특회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림 Ⅵ-6-1> 회계계정 세입·세출흐름도



나.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사무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하였고, 임명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계산증명규칙 등에 따라 위탁받은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표 Ⅵ-6-3> 회계관계직원임명 현황

회 계 직 명	회계관계직원(임 · 직원)	담 당 업 무
○세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 징수 및 세입총괄
○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공사 기획관리본부장	환급금지급관리
○재무관	○한국석유공사 재무처장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장	지출원인행위총괄, 유가완충준비금관리 출자금지출원인행위총괄
○지출관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지출총괄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담당사무관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재산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기획관리본부장	국유재산총괄관리,
- 분임재산 관리관	- 대한석탄공사 사업처장	석탄비축관리
○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채권관리
○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유가증권관리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물품관리관	○한국석유공사 재무처장	물품총괄관리
- 분임물품관리관	- 대한석탄공사 사업처장	석탄비축관리
○물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부장	물품출납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대한석탄공사 영업부장	물품출납

다. 회계사무의 위탁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과 예산제도의 운용, 예산의 편성·집행(예산의 배정·전용·이월, 예비비사용 등) 및 자금의 배정업무는 산업자원부(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의 예산 집행 및 사업을 관리한다.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 결산, 자산관리 및 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였고, 예산의 지출은 산업자원부 각 사업담당과의 승인하에 예산의 배정 및 자금의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출하고 그 실적을 산업자원부 회계운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하였다.

<표 Ⅵ-6-4>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및 보고사항

구분	회계업무 흐름도	회계직명	보고사항(보고처)
세 입	석유수입부과금 / 석유판매관리부과금 / 가스안전관리부담금 / 기타세입(융자금회수 등)	·세입징수관 ·환급금지급명령관	-세입징수보고서 (재경부) -세입징수액계산서 (감사원) -환급금지급액 계산서(감사원)
회계관리	특별회계 재산관리 물품관리 계약관리 채권관리 유가증권관리 융자 / 보조 / 출연 / 출자 / 회계관리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계약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무원	- 국유재산관리계획(재경부) - 국유재산집행실적보고(재경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재경부) -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계산(감사원) -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감사원) - 물품관리보고서(조달청) - 물품수급관리계획(조달청) - 물품관리계산서(감사원) - 계약실적보고서(재경부) - 채권현재액 보고서(재경부) - 국가채권관리계산서(재경부) - 유가증권 증감계산서(감사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감사원)
세 출		·재무관 ·지출관	- 지출원인 행위액 보고서(재경부) - 지출액보고서(재경부) - 지출계산서(감사원)

2. 2004년도 에특회계 예산 내역

가. 세입예산 내역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은 1ℓ당 14원을 징수하여 8,660억원, LNG 수입부과금은 톤당 9,750원을 부과하여 1,235억원, 등유 판매부과금은 1ℓ당 23원을 부과하여 2,009억원,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은 1ℓ당 17원을 부과하여 53억원, LPG판매부과금은 1톤당 29,412원에서 2004년 7월부터 62,268원으로 인상하여 1,800억원,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1Kg당 4.5원(LNG는 1㎥당 3.9원)을 징수하여 LPG와 LNG에서 총 918억원, 출자기관으로부터 배당수입으로 112억원, 전년도이월금으로 588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각종 에너지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의 원리금수입 7,381억원, 재특예탁금 회수 800억원, 재특예탁금 이자수입 220억원 기타 보조금 반환수입 등 70억원으로 세입총계는 2003년 대비 4.7% 감소한 2조 4,314억원이고, 투자계정전입금을 제외한 세입순계는 1.4% 감소한 2조 3,847억원이다.

나. 세출예산 내역

2004년도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및 집단에너지공급 등 지속가능발전 에너지시스템구축사업에 6,738억원, 석유비축, 국내외유전개발, 도시가스공급, 석유품질관리 및 가스안전관리 등 석유·가스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사업에 6,831억원, 탄가안정대책, 폐광대책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등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 4,477억원, 일반광업육성, 광산지역 공해방지 및 해외자원개발 등 일반광업자원 개발사업에 1,558억원, 에너지정책연구 등 기타에너지정책사업에 83억원, 재특예탁금 1,500억원, 투자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468억원, 예비비를 7억원으로 편성하여 산업자원부의 에특회계 세출총계 2조 1,661억원이고, 에특회계 내의 계정간 전출금을 제외한 세출순계는 2조 1,193억원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LPG차량 연료가격보조 등 타부처 사업비는 2,654억원이다.

<표 Ⅵ-6-5>　　2004년도 에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B/A)
세입	○원유・석유제품수입부과금	889,210	866,012	△23,198	△2.6
	○LNG 수입부과금	116,064	123,523	7,459	6.4
	○등유판매부과금	219,841	200,938	△18,903	△8.6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4,390	5,290	900	20.5
	○LPG 판매부과금	106,061	179,965	93,904	69.7
	○가스안전관리부담금	83,838	91,839	8,001	9.5
	○출자금배당수입	7,403	11,200	3,797	51.3
	○전년도이월금	368,146	58,820	△309,326	△84.0
	○진폐사업주부담금	20	17	△3	△15.0
	○보조금정산반환금	-	7,000	7,000	순증
	○재특예탁원금회수	-	80,000	80,000	순증
	○재특예탁이자수입	33,260	22,000	△11,260	△33.9
	○융자금원금회수	332,620	536,959	204,339	61.4
	○융자금이자수입	258,672	201,140	△57,532	△22.2
	○투자계정전입금	131,876	46,756	△85,120	△64.5
	총 계	2,551,401	2,431,459	△119,942	△4.7

<표 Ⅵ-6-6> 2004년도 에특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총 계	2,551,401	2,431,459	△119,942	△4.7
	순 계	2,419,525	2,384,703	△34,822	△1.4
1. 지속가능발전에너지시스템구축		673,991	673,752	△239	△0.0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32,963	58,788	25,825	78.3
○지역에너지개발		25,752	36,887	11,135	43.2
○대체에너지보급보조		2,075	4,696	2,621	126.3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		-	6,300	6,300	순증
○공공기관대체에너지의무화지원		-	5,000	5,000	순증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	14,000	14,000	순증
○에너지자원기술개발		35,971	43,161	7,190	20.0
○에너지인력양성		5,590	5,200	△390	△7.0
○에너지관리공단지원(출연)		21,140	21,960	820	3.9
○기후변화협약대응체제구축		2,500	2,900	400	16.0
○지역난방요금안정화		33,000	-	△33,000	△100.0
○신재생에너지보급 융자		25,000	50,000	25,000	100.0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305,000	252,860	△52,140	△17.1
○집단에너지공급 융자		185,000	172,000	△13,000	△7.0
2. 석유・가스 안정공급		778,843	683,064	△95,779	△12.3
○석유비축사업 출자		242,460	220,462	△21,998	△9.1
○석유비축자산관리		52,042	56,419	4,377	8.4
○원유도입선다변화		3,854	-	△3,854	△100.0
○유가완충		20,000	-	△20,000	△100.0
○유전개발 출자		47,182	47,754	572	1.2
○유전개발 융자		216,020	207,776	△8,244	△3.8
○해외석유개발조사		230	251	21	9.1
○석유품질관리		1,048	6,200	5,152	491.6
○LP가스품질검사		870	870	-	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석유유통구조개선	-	1,400	1,400	순증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보조)	34,637	33,932	△705	△2.0
○LNG공급기반구축 융자	92,500	45,000	△47,500	△51.4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융자	27,000	20,000	△7,000	△25.9
○가스안전관리 융자	41,000	38,000	△3,000	△7.3
○송유관진입도로건설 융자	-	5,000	5,000	순증
3. 석탄산업합리화	490,446	447,735	△42,711	△8.7
○탄가안정대책비	207,075	195,193	△11,882	△5.7
○폐광대책비(광해방지제외)	81,532	40,702	△40,830	△50.1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76,823	77,539	716	0.9
○탄광지역개발	73,016	84,701	11,865	16.0
○석탄공사경영정상화지원(출자)	40,000	40,000	-	0.0
○대체산업창업지원 융자	12,000	9,600	△2,400	△20.0
4. 일반광 개발 및 광해방지	156,932	155,777	△1,155	△0.7
○해외자원개발투자(보조)	8,555	10,710	2,155	25.2
○해외자원개발 융자	62,000	50,000	△12,000	△19.3
○해외자원조사	2,578	3,298	720	27.9
○국내 일반광업육성	8,001	8,645	644	8.0
○석재산업육성	381	381	-	0.0
○석재기능공양성	238	238	-	0.0
○광산안전시설	3,596	3,800	204	5.7
○폐탄광 광해방지	11,100	15,000	3,900	35.1
○광산지역 공해방지	12,769	15,322	2,553	20.0
○광업진흥공사 출자	30,000	30,000	-	-
○광업진흥공사운영지원(보조)	2,650	2,469	△181	△6.8
○석재산업융자	10,000	10,000	-	-
○지질조사및자원탐사	3,850	4,500	650	16.9
○자원정보시스템구축	914	914	-	-
○지질자료표준체계구축	300	500	200	66.7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5. 기타 에너지정책	6,519	8,300	1,781	27.3
○에너지특정정책연구	2,100	2,850	750	35.7
○에너지정책연구개발	456	456	-	0.0
○에너지국제회의	300	-	△300	△100.0
○IEA분담금	450	590	140	31.1
○동북아에너지연구센타(출연)	-	1,000	1,000	순증
○회계위탁관리비	537	540	3	0.6
○석탄비축자산관리	2,620	1,809	△811	△31.0
○광산재해위로금	13	-	△13	△100.0
○에너지정책홍보	-	1,000	1,000	순증
○회계관리비	43	55	12	27.9
6. 정부내부거래 등	282,876	197,438	△85,438	△30.2
○재특예탁금	150,000	150,000	-	0.0
○융자계정전출금	131,876	46,756	△85,120	△64.5
○예비비	1,000	682	△318	△31.8
7. 타부처사업	161,794	265,393	103,599	64.0
○진폐사업비(노동부소관)	27,116	59,363	32,247	118.9
○장애인보조(보건복지부)	108,413	178,240	69,827	64.4
○선박유류가격보조(해양수산부)	14,557	8,347	△6,210	△42.7
○국가상이유공자보조(국가보훈처)	11,708	19,443	7,735	66.1

<표 Ⅵ-6-7>　　2004년도 에특자금 융자조건

1. 금리 일반기준(2001.9.27일 변동금리 시행)

□ 대출이자율 : 매분기초 직전월의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평균에 연동 조정

○ 높은금리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을 적용(단, 0.25%p 단위로 변동)

○ 낮은금리 : 높은금리에서 1.25%p를 뺀값

□ 대출수수료 : 0.5～1.5%(ESCO신용대출은 최고 4.00%까지)

□ 융자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대출수수료를 뺀 값

2. 사업별 융자조건(이자율은 2004. 1/4분기 현재)

(단위 : %, 년)

기 관	사 업 명	융 자 이자율	대 출 수수료	대 출 이자율	기 간 (거치/상환)	융자비율 (%)
석유공사	LNG공급기반구축	4.25	0.5	4.75	5/10	80이내
	도시가스배관건설	4.05	0.7	4.75	5/10	80이내
	송유관진입도로건설	4.25	0.5	4.75	5/5	100이내
	국외유전개발 (탐내사사업)	2.50 (3.50)	1.0 (-)	3.50 (3.50)	5/5 (15년이내)	100이내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공급 (대상기관직접대출)	3.75 (4.25)	1.0 (0.5)	4.75 (4.75)	8/7 (8/7)	100이내 100이내
	에너지절약시설설치 (ESCO담보대출) (ESCO신용대출) (기술담보대출)	2.00 (3.00) (2.75) (2.50)	1.5 (1.5) (최고 4.0) (1.5)	3.50 (4.50) (최고6.75) (4.00)	3/5 (5/5) (5/5) (2/3)	100이내
	주택단열개수	3.25	1.5	4.75	2/3	100이내
	대체에너지보급 (기술담보대출) (태양열온수기)	2.00 (2.50) (2.00)	1.5 (1.5) (1.5)	3.50 (4.00) (3.50)	5/10 (2/3) (2/3)	100이내
광진공	석·골재산업	3.75	1.0	4.75	3/5	100이내
	해외자원개발	2.50	1.0	3.50	5/10	100이내
합리화사업단	대체산업창업지원 (운전자금)	2.00 (2.00)	1.5 (1.5)	3.50 (3.50)	5/5 (2/3)	80이내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관리	2.50	1.0	3.50	3/5	90이내

제 3 절 에특회계 향후 운용방향

1.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과제

에너지 및 자원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급은 국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자원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 수요관리 강화 및 석유의존도 감축 등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수송용을 중심으로 석유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 가정상업용은 가스·전기 등 고급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기반시설의 확충과 공기업의 민영화 및 에너지원간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에너지산업구조를 시장주도형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온실가스 저감방안은 국내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IEA회원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증진, APEC 국가간 에너지협력사업 주도적 개발, 에너지자원 보유국과의 양자간 에너지협력 활성화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에너지·자원분야에 대한 국제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2. 향후 에특회계 운용방향

가. 중장기 에너지자원정책 추진과 연계 지원

매 5년마다 향후 10년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중요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도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나. 중점 지원대상 사업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외 유전개발사업과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원유, 유연탄 및 주요 산업원료 광물의 자주개발 도입률을 제고하고 국내 부존자원 중 경제성이 있는 일반광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 에너지 수요구조 변화에 맞는 예산 지원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석유비축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에너지 수요구조의 변화에 맞게 석유·가스·전기 등 고급에너지 공급시설이 적기에 확충되도록 LNG공급기반구축,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및 가스안전관리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석탄산업은 수요감소를 감안 수급균형이 유지되도록 생산지원은 축소하되 폐광대책비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탄광지역 경제활성화사업도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